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삼일학원(협성대학교)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삼일학원 (협성대학교)의 재산 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 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1. 법인 일반업무관련	3	미회수어음 외 2건	—	지적사항없음	
2. 법인수익사업관련	—	—	—	—	
3. 학교관련(산단포함)	5	연구년실적물 미제출외 4건	—	—	
계	8				

2016년 4월 18일

학교법인 삼일학원

감 사 서 문 원(인)

감 사 박 종 범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469호)

피감사 기관장

2016년 4월 18일

학교법인 삼일학원

이 사 장 서 철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16년 4월 18일

협성 대학교

총 장 박 민 용 (인)

협성대학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5년 3월 1일 부터 2016년 2월 29일 까지)

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				
<협성대학교> 1) 연구년 제42조(연구년 의무사항)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67 739 718 840"> <tr> <td>미제출자(1명)</td><td>지연 제출자(3명)</td></tr> <tr> <td>김</td><td>정, 이, 유</td></tr> </table> 2) 대학구조개편 2차 평가 대비 교육부 정량 및 정성평가 지표를 향상하기 위하여 세입, 세출의 구체적인 조정과 계획이 필요하며, 정원 감소 대비 세입, 세출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 하시기 바람. <산학협력단> 1) 송영배 연구원 환경부 대납 분 4,700,000원 회수하기 바람. 2) ㈜디앤씨테크 임대미수금 [7,021,000원 (보증금1,690,000원)] 을 회수하기 바람 3) 고유목적준비금 적립 금액중 일정금액 (예 5,000만원)을 학교 교비로 전출하여 산단 본연의 목적 사업을 이행하기 바람.	미제출자(1명)	지연 제출자(3명)	김	정, 이, 유	○관련: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장 제 43조 [연구년 의무사항] ④항 상기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년 종료 후 실적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하는 경우 차기 연구년 신청 시 지연된 기간을 재직기간에 공제하고, 제출기한 종료일 이후 2년간 교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연구년 시행교원이 연구년 기간 종료 후 기간내에 실적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, 의무사항 미이행 교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행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2차 평가 대비를 위해 정량 및 정성지표 향상과 정원 감소에 대비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1) 현재 송영배 연구원에게 환수금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,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(소액 소송 추진)을 취할 예정입니다. ○내용증명발송 : 1차(2016.04.26.)/2차(2016.05.11.) 2) 미납금중 일부 회수완료, 미납잔액을 2016.6.30.까지 납입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.(미납시 보증금에서 변제) ○1차 입금완료 : 2016.4.14. (3,413,000원) ○잔액 입금 : 2016.6.30.까지 납입확약 (3,608,000원) 3) 현재 고유목적적립금(1억원)이 정기예금되어있어 만기(05월22일) 이후 5천만원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협성대학교로 전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.
미제출자(1명)	지연 제출자(3명)				
김	정, 이, 유				
피감사기관장 협성대학교 총장 박 민 용 (직인)					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협성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협성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) 지적된 사항 :

1.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실적물 미제출
2. 대학구조개편 2차 평가 대비
3. 산학협력단(①연구원 환경부 대납분 회수조치, ②임대 미수금 회수조치)
(③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액 중 일정금액 교비 전출)

2016. 4. 18.

학교법인 삼일학원

감 사 : 서 문 원 

감 사 : 박 종 범 

피감사자(임회인)

직 명 : 총무처장직무대리

성 명 : 황 대 연 